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대상 확대 등〉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444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대상을 장애인 활동지원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불법주차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u>사람이 신청하는 경우</u>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람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에게</u> ----- ----- ----- -----.
③ ~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u>제3항에</u> 따른 회수 및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유효기간, 제3항에</u> -----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27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u>2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2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30만</u> <u>원</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¹⁾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함)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주차표지 신청대상을 현행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더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를 추가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 활동지원사의 근거조항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²⁾이므로, 이를 제27조제1호로 표기한 개정안의 표현은 오히려 보임.

< 장애인 운전자 및 자동차 보유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등록 장애인	2,644,700	2,648,424	2,641,896
장애인 운전자 ¹⁾	632,258	645,776	654,569
자동차 보유 장애인 ²⁾	1,178,170		

주1): 장애인 운전자는 본인용 주차가능(주차불가 포함) 표지 발급 건수를 토대로 한 추정치

주2): 자동차 보유 장애인은 18세 이상 기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46.1%)을 적용한 추정치[18세 이상 장애인수(2,555,685명) × 자동차 보유 가구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자에 활동지원사를 추가하는 경우,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① 장애인주차구역 면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보행장애로 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주차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활동지원사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및 주차표지 발급 현황 >

(단위: 면/건)

구분	2021	2022	2023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302,205	302,205	302,205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507,031	513,115	516,479
면수 대비 발급 건수	168%	170%	171%

자료: 보건복지부

② 현재 활동 중인 활동지원사(112,570명)의 상당수가 운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고령 여성이라는 점(현재 활동 중인 활동지원사 중 60대 이상 여성은 39,159명으로 전체 대비 약 35%),

< 활동지원사 현황 >

(단위: 명)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2023년	118,180		112,570	
성별/연령대	남	여	남	여
20대 미만	15	28	13	27
20대	704	878	639	813
30대	1,193	3,180	1,097	2,975
40대	1,843	16,822	1,726	16,120
50대	3,475	41,271	3,265	39,529
60대	6,087	36,874	5,733	35,129
70대 이상	1,551	4,259	1,474	4,030

자료: 보건복지부

③ 자기 차량을 활용한 이동지원이 활동지원사의 수행 업무가 아닌데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의무 부여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교통약자임에도 현재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산부, 고령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실익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은 이들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 오·남용 소지가 크고, 주차표지 발급대비 장애인주차면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난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유효기간 설정(안 제17조제7항)

-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고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음.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유효기간 >

[유효기간 없음]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거소신고증 체류기간 등의 유효기간]	[계약기간을 유효기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제34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

조에 따른 인의로 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대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가능표지 발급받은 자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전문의를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거소신고를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의 내용을 재구성

□ 다만,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 직접 주차표지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면, 관련 업무담당자, 발급대상, 비장애인 등이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됨.

- 보건복지부는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관련 지침인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금액 인상(안 제27조제3항)

-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및 제27조3)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과권자는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등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높여 부과할 수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 상한(2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3)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3년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불법주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약 97%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371억 9,90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태료 부과(건)	516,373	430,609	370,350	403,368	443,389
부과금액	499억 3,900만원	409억 6,700만원	344억 9,800만원	400억 3,600만원	495억 3,7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과태료 부과 유형(2023년) >

구분	불법주차	주차 방해	기타	계
과태료 부과(건)	429,143	7,556	6,690	443,889
부과금액	371억 9,900만원	25억 3,800만원	9억8,000만원	495억 3,700만원

주1): 주차 방해의 경우 과태료는 50만원

주2): 기타는 주차표지 무단 사용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의 최근 증가 추세와 그 대부분이 불법주차가 원인임을 고려하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등편의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금액 역시 2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만약, 동 법에서만 금액을 인상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현행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과태료) 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이상
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	10	

4)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중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8588호(2021.3.5.)),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신청자 확대(안 제17조제2항)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장애인에게 발급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활동지원사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은 이들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주차표지 오남용 우려가 큼.
 - 또한, 자기 차량을 이용한 이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의무 부여로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

- 보행상 장애로 판정되지 못한 심한 장애인*의 주차표지 발급 요청 민원이 빈발하는 상황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의 어르신, 일시 부상(장애), 장기요양 등급자 등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표지 발급 민원**이 쇄도함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발급을 불허한 바 건의 수용 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 ('23.12월) 심한장애인 978,634명/ 표지 발급 대상(차량 소유) 451,150명/ 표지 발급 267,013명

** (민원종류) 지자체 규제개선, 국민신문고(일반, 제안), 청원24

- 현재 주차표지 발급대비 장애인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난을 심화시켜 보행상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큼.

* (2021년 12월 기준) 주차면수(302,205면), 표지발급(516,479매)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신중검토)

□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

- 다만,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주차표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표지 오·남용과 이용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입법 취지에 적합한 차량의 개조 확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이용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율 정비 등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통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 시의 책임과 보상 한계 정비, 교통비 정산과 이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의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 등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세부 대상자를 법률로서 정함에 따른 개정 및 정비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보임.

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법안철회 요청)

□ 현행 제도에서 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법안 철회요청

- 활동지원사가 자차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백이면 백 활동지원사가 그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하며, 심한 경우 장애인이용자가 사고에 따른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대놓고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하는 법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유효기간 설정(안 제17조제7항)

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판 발급대상은 대부분 영구적인 장애로 인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2(지침)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그 취지는 동의하나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금액 인상(안 제27조제3항)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억제효과 측면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과태료 금액의 상향은 위법 행위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유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과 균형을 맞추어 산정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참고: '21.4월 법무부 의견(과태료 상향 반대)

- 현행 「교통약자법」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위반행위자 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 초래 우려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신중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를 인상하여 위반을 억제하고, 적합 대상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과태료 금액의 상향은 위법 행위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유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과 균형을 맞추어 산정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개정 반대)

□ 현행 과태료 기준이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행령에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바, 30만원으로 상향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이로 인한 처벌 강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과태료의 상향보다는 불법주차 또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